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 2013. 11. 28
제 안 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 할 경우 사전에 구의회에 사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명시하여 무분별한 전출을 막고, 특별회계 본래의 용도에 맞는 예산집행을 유도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가. “일반회계로의 전출”로 함(안 제4조제2항제2호).
- 나.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함(안 제4조제3항).
- 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함(안 부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회계로의 전출

안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제4조(세출)(생 략) | 제4조(세출) ① (현행과 같음) | 제4조(세출) ① (개정안과 같음) |
| <p><신 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재정 운영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3조제1호 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7호, 제9호 및 제12호 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 다.</p> <p>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 합관리기금에 예탁 2. 일반회계로의 전출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신 설></p> | <p>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p>1. (개정안과 같음)</p> <p>2. 일반회계로의 전출</p> <p>③ 구청장은 제2항제2호 의 경우 그 사유를 서울특 별시 마포구의회에 예산안 을 제출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 <p>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p> |
| | | <p>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p> |